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4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조계원·박수현·양문석

이광희 • 박지원 • 주철현

김윤덕 · 김문수 · 민병덕

양부남 · 김현정 · 임오경

김우영(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 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 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시설"을 "시설 및 공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을"로 하며,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을 "시설이나 공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나무 등 화재에 취약 한 물건이 제거된 공간을 말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④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거나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
- ⑥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에 필요한 손해배상의 범 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u>시설</u> 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및 치 등) ① (생 략) 공간의 설치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 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 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 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 (나무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 이 제거된 공간을 말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u>시설 및 제2</u>항에 따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 른 산불방지 안전공간을-----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 리자 및 관리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_제38조제2 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거나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경 우에는 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한 후 지체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시설을</u>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없이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⑤</u>
시설이
나 공간을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
<u>전공간</u>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
전공간 마련에 필요한 손해배
상의 범위 및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